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물품의 용량 또는 성분의 변경 전후 사항 표시〉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2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5.
3. 회 부 일 :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물품등의 표시기준 중 가격에 단위 용량당 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 ----- ----- ----- ----- -----.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 <u>가격</u> ·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1. ----- - <u>가격(단위 용량당 가격을 포함한다)</u>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 ~ 4. (생략) ② (생략)	<u>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및 성분 등이 다시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u> 1. <u>물품등의 포장 등에 표시</u> 2. <u>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u> 3. <u>물품등의 판매장소(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포함한다)에 게시</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 1. <u>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최근 사업자가 물품등의 가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물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춤)”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가진 제품을 구매하게 되나, 가격 변동의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기 어려운 현실임.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①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②참가¹⁾ 가격¹⁾ 생필품 가격조사, ③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 ④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니터링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3분기 총 26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한 결과 총 4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됨.²⁾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정하는 표시기준 중 가격에 단위 용량당 가격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1)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http://www.price.go.kr>)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58개 품목(540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2) 「24년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4개 상품 용량 감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4. 12. 27.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임.

○ 또한 현행법 제12조³⁾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제3조의²⁴⁾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용량, 규격, 중요 원재료 등의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자의 표시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가공식품,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등 용량 등 변경 사실 미 고지 행위 금지 대상품목을 유형별로 제한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와 달리 개정안은 사업자의 모든 상품에 대해 주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류, 가구 등과 같이 슈링크플레이션과 연관이 없는 상품도 고지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둘째, 개정안은 물품등의 용량 뿐만 아니라 성분 등 주요사항

-
- 3) 제12조(거래의 적정화)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제3조의2(중요사항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의 금지) [별표1]의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는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충실히 알리지 아니한 채로 용량, 규격, 중요 원재료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 및 고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재료 함량 등 성분의 변경에 대한 표시기준이 불분명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성분과 그 비율이 물품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변경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 중이며, 표시기간, 표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별표 1·2>

문 의 처
02)6788-5115

[참고자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별표1·2

[별표1]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및 식품유형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분 류	식품유형
가공 식품	햄 류	가공 식품	캔디류	가공 식품	땅콩
	우 유		빙과류		견과류가공품
	설 탕		아이스크림류		곡류가공품
	커피(액상제외)		초콜릿류		과채가공품
	치 즈		초코파이(상자)		건면
	식용유		잼류		유탕면
	참기름		베이컨류		카레(커리)
	마요네즈		소세지류		고춧가루
	간 장		만두류(냉동)		물엿
	맛 살		젓 갈		복합조미식품
	식 초		액 젓		가공두유
	복합조미식품		차류(액상제외)		혼합음료
	식 염		과·채음료		탄산수
	참치캔		탄산음료		가공유
	라 면		코코아		김치
	분 유		식물성 크림(커피용)		즉석섭취식품
	유산균발효음료		마카로니		즉석조리식품
	고추장		스파게티		영·유아용 이유식
	된 장		버터류		
	과·채쥬스		마가린류		
	소스류(액상)		벌 꿀		
	소스류(액상제외)		빵가루		
	케 찹		빵 류		
	청국장		시리얼		
	밀가루		식용기름		
	어 묵		와인류		
	국 수		생선통조림		
	두 부		생 수		
	조미김		주 류		
	과 자		드레싱		
	껌		건포류(중량단위)		

분 류	품 목	분 류	품 목
일용 잡화 및 생활 용품	랩		키친타월
	호 일		부탄가스
	화장지(롤)		살균제
	분말세제		살충제
	섬유유연제		탈취제
	종이기저귀		습기제거제
	생리대		구강청결제
	세면비누(고형)		손세정제
	삼 푸		바디워시
	린 스		염색약
	주방세제(액상)		로션
	칫 솔		선크림
	치 약		립밤
	티슈(상자)		마스크
	위생백		반창고
	가루비누		물티슈
	세탁비누(고형)		면도날
	세탁비누(액상)		건전지
	합성세제(액상)		반려동물 사료
	고무장갑		

[별표1]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및 식품유형

1. 위반행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
- 용량 등과 가격을 함께 조정하여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는 변경 행위는 제외
-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고지방법

가. 사업자는 상품의 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다.

- (1)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
- (2)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 (3)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나. 위 가.에 따른 고지기간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예 시 >

포장 표시	"100g → 90g", "100ml → 90ml" 등							
홈페이지 게시	제품 용량 리뉴얼 안내 아몬드 일부제품의 용량이 변경 중입니다 리뉴얼 제품 120g 허니버터아몬드 130g / 외사벤티아몬드 130g / 군옥수수맛아몬드 130g 마늘빵아몬드 130g / 청양마요아몬드 130g / 떡볶이맛아몬드 130g 불닭맛아몬드 130g 190g 허니버터아몬드 210g / 외사벤티아몬드 210g / 군옥수수맛아몬드 210g 마늘빵아몬드 210g / 카리멜술티드아몬드 210g / 감맛아몬드 210g 청양마요 아몬드 210g / 떡볶이맛아몬드 210g / 불닭맛아몬드 210g NEW	용량 변경 안내 2023년 10월 1일부터 우유 함유도가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로써 이에 따라 자사에서도 부득이하게 용량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table> <tr> <th>기존</th> <th>변경</th> </tr> <tr> <td>200 mL</td> <td>180 mL</td> </tr> <tr> <td>1,000 mL</td> <td>900 mL</td> </tr> </table> 고객님의 더 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0 유청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며 고객님께 배달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변경	200 mL	180 mL	1,000 mL	900 mL
기존	변경							
200 mL	180 mL							
1,000 mL	900 mL							
판매장소 게시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게시							